

# 임금체불

##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 처리한 경우 등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 •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히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지연이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 임금채권의 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임금,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지급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체당금제도(임금채권보장법)

### • 체당금제도란?

기업이 도산하면서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 체당금 지급사유

① 기업이 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은 받은 경우(재판상 도산)

②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인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인정)받은 경우(사실상 도산)

※ 체당금 청구기간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등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청구

• 도산 등 사실인정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사업주 요건	근로자 요건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인 사업장 · 당해 사업을 6월 이상 행한 사업주 · 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 도산 등 사실인정의 요건 ㉠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 ㉡ 사업의 폐지, 폐지 과정 ㉢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재판상 도산의 경우 -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신청일 -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한 경우: 신청일 또는 선고일 ㉡ 사실상 도산의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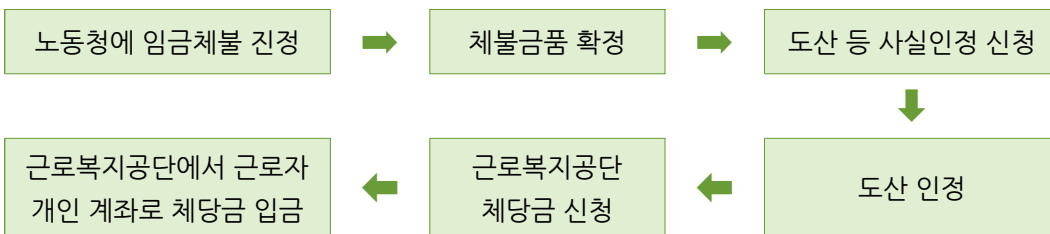
• 지급내용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의 상한액(임금 및 휴업수당 1개월분, 퇴직금 1년분)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 지급절차



※ 임금체불 진정신청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은 순서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구제절차

- 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 이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진정을 하여야 합니다.

### 진정 신청시 꼭 알아야 할 정보

사업주 정보	사업장 주소, 실제 사업주 이름, 사업장 또는 사업주 연락처 등 ※ 사업장 주소와 사업주 이름, 연락처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

### 출석 조사시 있으면 유리한 것들

임금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통장 월급입금내역 등
근로시간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 App, 교통카드이용내역 등

- TIP** 1. 간단하게라도 체불임금 내역과 임금체불 사유를 적어 가시면 좋습니다.  
2.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모르시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문의하세요.

- ②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서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으십시오.
- ※ 고용노동청 조사 이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됩니다. 사업주 형사입건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③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에게 민사소송을 무료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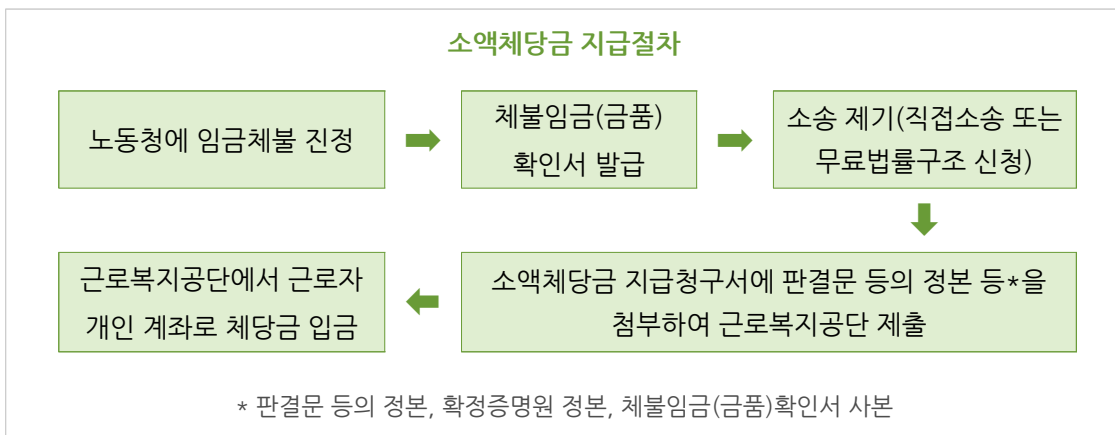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 대상자 증빙서류 :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 발행의 체불임금확인서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작성 등

④ 소액체당금제도(임금채권보장법)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체당금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지 급 액	지급 범위	·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 지급받지 못한 최종 3년분 퇴직금
액	상한액	· 합계 300만원
지급사유		·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지급대상 근로자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
사업주 기준		· (퇴직일까지)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가동 사업주가 건설업자가 아닌 무면허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직상의 건설업자도 회사로 봄.
청구기한		· 확정된 종국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



**벌칙**

- 지급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임금을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거나 다른 사람이 지급 받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43조(임금 지급), 제49조(임금의 시효)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임금 등의 지급)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제6조(체당금 상한액의 결정·고시),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제8조(사업주의 기준), 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제10조(파산선고 등 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 관련 서식

- 임금체불진정신청서
- 체당금등 확인 신청서

※ 관련 서식은 자료실 > 서식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